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28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김교흥・문진석・노종면

이용우 • 윤준병 • 김윤덕

김문수 · 모경종 · 김동아

강선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(온라인복권)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총 4,498억원에 달하고, 이 중 5등의 5,000원 당첨금이 65.6%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남.

이처럼 큰 액수의 당첨금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함에 따라 복권 당첨자의 재산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당첨자가 당첨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당첨금 수령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 그러나 현행법에는 복권 당첨금을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.

이에 현금카드를 통하여 복권을 구매한 5만원 이하의 소액 당첨금에 대하여는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당첨금 전자지급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액 당첨자의 당첨금 수령 편

의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소액 당첨금의 지급 방법 등) ① 복권위원회는 현금카드를 통한 결제방식으로 온라인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을 구매한 경우 5만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하여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당첨금을 복권 구매자의 현금카드 결제계좌에 자동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 - ②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최종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하여 해당 복권의 최종구매자에게 당첨 결과를 알려야 한다.
 - ③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제 및 당첨금 지급을 위한 시스템 (이하 "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 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 및 당첨금 지급의 기한과 제3항에 따른 당첨금 전자지급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 영하여야 한다.

 ④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방법

 및 당첨금 지급의 기한과 제3

 항에 따른 당첨금 전자지급 시

 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

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